



금융감독원

# 보 도 자 료

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보도       | 2022.9.30.(금) 조간 | 배포  | 2022.9.29.(목) |     |                |
|----------|------------------|-----|---------------|-----|----------------|
| 담당<br>부서 | 보험감독국<br>특수보험1팀  | 책임자 | 팀 장           | 최진영 | (02-3145-7471) |
|          |                  | 담당자 | 선 임           | 정동욱 | (02-3145-7472) |
|          | 손해보험협회           | 책임자 | 부 장           | 백승욱 | (02-3702-8590) |
|          |                  | 담당자 | 팀 장           | 박인규 | (02-3702-8645) |

## 현행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합니다.

### 주요 내용

- **[개선 내용]**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보급 확대, SUV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맞춰
- 엔진 배기량을 주로 고려하는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합니다.

| 구분                   | 현행                 | 개선                   |
|----------------------|--------------------|----------------------|
| ①전기차                 | 고출력 전기차 별도 기준 없음   | 모터 출력 390kw 이상 구간 신설 |
| ②하이브리드 <sup>1)</sup> | 엔진 배기량만 고려         | 추가된 배터리 용량 고려        |
| ③다운사이징 <sup>2)</sup> | 엔진 배기량만 고려         | 엔진 출력 고려             |
| ④SUV                 | 일반 세단 차량 기준 대차료 산정 | SUV 차량 기준 대차료 산정     |

주 1) 내연기관 엔진 및 전기 배터리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차량

2) 기존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면서 출력을 높이는 고효율 엔진 차량

- **[기대 효과]** 향후 친환경 및 SUV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 (예시) 쏘렌토(SUV) 1.6(하이브리드 차량) 사고시

(현행) 아반떼(일반 세단) 1.6 대차료 지급 → (개선) 쏘렌토(SUV) 2.2 대차료 지급

- 대차료 관련 분쟁 해소로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1 추진 배경

- 최근 탄소중립 정책 및 ESG경영 확산으로 자동차 산업도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 전체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은 '16년 1.1%(24만대)에서 '21년 4.7%(116만대)로 확대되었고, 특히, '21년 신규 등록된 친환경차는 전년 대비 41.3% 증가(내연기관 차량은 0.8% 증가)

\*\* EU, 美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엔진 장착 차량 신규 판매를 중지할 예정

- 또한, 코로나19 이후 차박(Car Camping) 등 레저문화 확산으로 다양한 종류의 SUV 차량이 출시되는 등 전체 차량에서 SUV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1年中 SUV가 처음으로 세단 판매량을 역전(SUV 비중 : 49%('20년) → 57%('21년))

- 한편, 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차(렌트)하는 비용

- 친환경차, SUV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최근의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를 대차료 지급기준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추어, 新유형 차량 사고시 대차료가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참고)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

- ◆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 지급 기준(대차료 항목)에 따라,
  - ① (대차 필요성) 非사업용자동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대차비용의 상당성) 동급(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
- \*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의미

## 2 주요 개선내용

- ◆ 新유형 차량별 특성에 맞는 대차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을 현행 FAQ\* 및 보험사 보상 실무지침에 반영합니다.

\* 금감원은 대차료 지급기준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고자 대차료 산정 일반원칙 등에 대한 FAQ를 홈페이지에 게시 중

### 가. 전기차

#### [사 례] 전기차 대차료 산정 관련

- (사실관계) A는 테슬라 모델X(SUV) 차량의 사고로 모하비(SUV) 3.0 차량을 대차 받았으나, 보험사에서 그랜저 2.4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
- (문제점) 모델X 차량의 출력 및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보험사가 내연기관 차량 중 배기량 2.4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

- (현행) 최근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가 출시됨에 따라, 高출력 전기차의 경우 높은 차량가액에 비해 대차료가 낮게\* 산정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20.11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특성을 반영하여, 모터 출력 등을 감안 220kw 이상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내연기관 대형차량(배기량 2.2 수준)의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개선

→ 그러나, 전기차 사고시 최대 대차료 지급한도가 배기량 22 엔진 장착 차량(통상 그랜저, K7)에 불과하여 高출력 전기차 사고시 분쟁 발생

- **(개선)** 전기차 모터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포르쉐 타이칸 390~560kw, BMW i4 M 400kw, 아우디 e-트론GT 390kw, 테슬라 모델X 500~895kw, 모델S 500~895kw 등 최상급 전기차종의 최고 출력기준 감안

### FAQ상 초대형 구간 신설(안)

| 종전                       |                    | 개선(안)                                             |                        |
|--------------------------|--------------------|---------------------------------------------------|------------------------|
| 전기차                      | 내연기관 차량            | 전기차                                               | 내연기관 차량                |
| 모델3(AWD),<br>모델S, I-PACE | 그랜저 2.2,<br>K7 2.2 | 모델3(AWD), I-PACE                                  | 그랜저 2.2, K7 2.2        |
|                          |                    | <u>모델 S, X, 포르쉐 타이칸,<br/>BMW i4 M, 아우디 e-트론GT</u> | <u>G80 3.3, K9 3.3</u> |

## 나. 하이브리드 차량

### [사 례] 하이브리드 차량 대차료 산정 관련

- **(사실관계)** B는 K8 1.6(하이브리드) 차량의 사고로 K8 2.5 차량을 대차받았으나, 보험사에서 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
- **(문제점)** 하이브리드 차량의 추가 배터리를 고려하였을 때, 보험사가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배기량 1.6 차량의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

- **(현행)** 최근 친환경차 보급 촉진 등으로 내연기관 대비 배기량은 축소하고, 배터리를 추가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 되고 있으나,

\* 내연기관 엔진 및 전기 배터리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차량

- 대차료 산정시에는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반영하지 않고,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여 분쟁이 발생 하였습니다.

- **(개선)** 하이브리드 차량의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하여,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예시) 배기량(1,598 cc)에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시 배기량 2,000cc와 유사

|    | 피해차량<br>(하이브리드) | 대여차량(a) | 한도 산정차량(b) | 지급액(min[a,b])   |
|----|-----------------|---------|------------|-----------------|
| ** | 싼타페 1.6         | 싼타페 2.2 | 싼타페 2.2    | 한도 내 실제 발생한 대차료 |
|    | K8 1.6          | K8 2.5  | K8 2.5     |                 |

## 다.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

### [사 례]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 대차료 관련

- **(사실관계)** C는 K5 1.6(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의 사고로 K5 2.0 차량을 대차받았으나, 보험사에서 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
- **(문제점)** 일반엔진 K5 차량은 배기량이 2.0 임에도 보험사가 사고차량의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배기량 1.6 차량의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

- **(현행)** 최근 배출가스 규제 등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다운사이징\*(Downsizing)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 기존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면서 출력을 높이는 고효율 엔진을 의미

- 동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일반엔진 장착 차량보다 엔진출력은 높고, 차량 크기가 동일\*함에도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   | 구분         | 가격            | 엔진출력  | 차량크기               |
|---|------------|---------------|-------|--------------------|
| * | 다운 K5 1.6. | 2,479~3,284만원 | 180마력 | 4.9m(길이)x1.9m(너비)x |
|   | 일반 K5 2.0. | 2,400~3,205만원 | 160마력 | 1.4m(높이)           |

- \*\* 예시) 피해차량이 K5 1.6(다운사이징)이고 대여차량이 쏘나타 2.0인 경우 아반떼 1.6 기준 대차료 산정 → K5 1.6(다운사이징)의 대차료는 11만원(1일)이고 아반떼 1.6의 대차료는 7만원(1일) 임을 감안시 약 4만원의 대차료 차이가 남

- **(개선)**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엔진출력, 차량크기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 피해차량<br>(다운사이징) | 대여차량(a) | 한도 산정차량(b) | 지급액(min[a,b])   |
|-------------------|---------|------------|-----------------|
| K5 1.6            | K5 2.0  | K5 2.0     | 한도 내 실제 발생한 대차료 |

## 라. SUV

### [사 례] SUV 대차료 관련

- **(사실관계)** D는 코나(SUV) 1.6 차량의 사고로 쏘나타 2.0 차량을 대차받았으나, 보험사에서 세단 차량 중 동일한 배기량인 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
- **(문제점)** SUV 차량에 대해 동일 배기량의 일반 세단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

- **(현행)** 보험사는 SUV 사고시, 렌터카 시장에서 SUV 차량이 많지 않은 현실 등을 감안하여

- 세단 차량을 대차한 후, 대차료도 동급의 세단 차량을 한도로 지급\*하여 소비자 분쟁이 있었습니다.

\* 예시) 피해차량이 코나(SUV) 1.6인 경우, 아반떼 1.6 기준 대차료 산정 → 코나 1.6의 대차료는 11만원(1일)이고 아반떼 1.6의 대차료는 7만원(1일)임을 감안시 약 4만원의 대차료 차이가 남

- **(개선)** SUV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피해차량   | 대여차량(a) | 한도 산정차량(b) | 지급액(min[a,b])   |
|----------|---------|------------|-----------------|
| 코나 1.6   | 쏘나타 2.0 | 코나 1.6     | 한도 내 실제 발생한 대차료 |
| GV80 3.5 | G80 3.5 | GV80 3.5   |                 |

### 3 기대 효과

□ 친환경 차량 및 SUV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① 동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 (예시) 쏘렌토(SUV) 1.6(하이브리드 차량) 사고시 : **(현행)** 아반떼(일반 세단) 1.6 대차료 지급 → **(개선)** 쏘렌토(SUV) 2.2 대차료 지급

② 대차료 관련 분쟁 해소로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4 향후 계획

① **(FAQ 반영 등)** 금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FAQ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9월말)하고, 10.11.부터 동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FAQ 수정(안) <붙임> 참조

\* 「홈페이지」-「e-금융민원센터」-「민원신청」-「자주하는 질문(FAQ)」

○ 이를 위해 동 제도 개선 내용을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쏘보험사(12개사)의 대차료 관련 실무 보상지침에 반영합니다.

②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반영)** 친환경차 등 일부 차량의 경우 대차료 산정시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 관련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4분기 중)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Q1) 교통사고 시 렌트비(대차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A)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의하면,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가 가능하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렌트 가능 여부를 사전에 상대방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차를 하는 경우 대차료 인정기준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차량과 동급의 대여자동차들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

※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로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인정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시 ]

| 구분              | 피해차량                  | 대여차량 (a)               | 대차료 지급 기준             |                                               |
|-----------------|-----------------------|------------------------|-----------------------|-----------------------------------------------|
|                 |                       |                        | 한도산정 차량(예시) (b)       | 지급액                                           |
| 예시1             | K8 2.5<br>(2,497cc)   | G80 3.5<br>(3,470cc)   | 그랜저 2.5<br>(2,497cc)  | - 한도 내에서<br>실제 발생한<br>대차료<br><br>min [ a, b ] |
|                 | 벤츠 E250<br>(1,991cc)  | BMW 520 i<br>(1,998cc) | 쏘나타 2.0<br>(1,999cc)  |                                               |
| 예시2<br>하이브리드    | 싼타페 1.6<br>(1,598cc)  | 싼타페 2.2<br>(2,151cc)   | 싼타페 2.2<br>(2,151cc)  |                                               |
|                 | K8 1.6<br>(1,598cc)   | K8 2.5<br>(2,497cc)    | K8 2.5<br>(2,497cc)   |                                               |
| 예시3<br>다운사이징 엔진 | K5 1.6<br>(1,598cc)   | K5 2.0<br>(1,999cc)    | K5 2.0<br>(1,999cc)   |                                               |
| 예시4             | 쏘렌토 2.2<br>(2,151cc)  | GV80 2.5<br>(2,497cc)  | 싼타페 2.2<br>(2,151cc)  |                                               |
| 예시5             | 코나 1.6<br>(1,598cc)   | 쏘나타2.0<br>(1,999cc)    | 코나 1.6<br>(1,598cc)   |                                               |
| 예시6             | GV80 3.5<br>(3,470cc) | G80 3.5<br>(3,470cc)   | GV80 3.5<br>(3,470cc) |                                               |

\* 다운사이징(Downsizing)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엔진출력, 차량 크기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일반엔진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



- **(예시1)**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K8 2,497cc이고 대여차량이 제네시스 G80 3,470cc인 경우 K8 2,497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그랜저 2,497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벤츠 E250 1,991cc이고 대여차량이 BMW 520i 1,998cc인 경우 벤츠 E250 1,991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쏘나타 1,999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 **(예시2)**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쏘타페 1,598cc(하이브리드)이고 대여차량이 쏘타페 2,151cc인 경우 쏘타페 1,598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쏘타페 2,151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K8 1,598cc(하이브리드)이고 대여차량이 K8 2,497cc인 경우 K8 1,598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K8 2,497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 **(예시3)**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K5 1,598cc(다운사이징)이고 대여차량이 K5 1,999cc인 경우 K5 1,598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K5 1,999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 **(예시4)**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쏘렌토 2,151cc이고 대여차량이 GV80 2,497cc인 경우 쏘렌토 2,151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쏘타페 2,151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 **(예시5)**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코나 1,598cc이고 대여차량이 쏘나타 1,999cc인 경우 코나 1,598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코나 1,598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 **(예시6)**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GV80 3,470cc이고 대여차량이 G80 3,470cc인 경우 GV80 3,470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GV80 3,470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 Q2) 교통사고 시 전기차의 렌트비(대차료)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피해차량이 전기만을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인 경우 “동급”이라 함은 규모가 유사한 차량을 말하며, 동일 내연기관 차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합니다. 다만, 동일 내연기관 차종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표를 참고하여 해당 내연기관의 차량을 빌리는데 소요되는 최저요금\*을 적용합니다.

\*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테슬라모델3(AWD)인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대형 차종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렌트 가능

※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로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인정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예 시 ]

| 전기차 |                              |                                               | 내연기관       |                        |
|-----|------------------------------|-----------------------------------------------|------------|------------------------|
| 규모  | 차종                           |                                               | 규모         | 차종                     |
| 소형  | 레이                           |                                               | 소형         | 모닝                     |
| 중형  | SM3, 쏘울, 아이오닉                |                                               | 중형         | SM3, K3, 쏘울            |
|     | 코나                           |                                               |            | 코나, 티볼리, 니로            |
|     | 넥쏘, 아이오닉5(125kW), EV6(125kW) |                                               |            | 투싼, 스포티지               |
|     | 볼트, 모델3(RWD)                 |                                               |            | 쏘나타, K5                |
|     | 220~390kw 미만                 | 모델3(AWD), I-PACE                              | 대형         | 그랜저 2.2, K7 2.2        |
|     | <u>390kw 이상</u>              | <u>모델 S, X, 포르쉐 타이칸, BMW i4 M, 아우디 e-트론GT</u> | <u>초대형</u> | <u>G80 3.3, K9 3.3</u> |

※ 현행 FAQ 중 SUV 관련 별도의 대차료 지급기준(Q3)은 삭제하고, “Q1) 대차료 산정 일반원칙” 에서 SUV 차량도 세단 차량과 동일하게 예시 방식으로 설명